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15 선고 2018가단5097593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. 30 선고 2019나8107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. 15 선고 2018가단5097593 판결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고1. B 주식회사

2. C

3. D

4. E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민

변론 종결2018. 12. 4.

판결 선고2019. 1. 15.

주 문

1. 피고 B 주식회사, 피고 C,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4.

27.부터 2018. 5. 26.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2018. 6. 20.까지는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

값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,

가. 피고 C와 피고 E 사이에 2018. 2. 7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
나. 피고 E은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8. 2. 7. 접수 제4746호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 B 주식회사와의 보증보험약정

1) 원고는 2006. 8. 23. 피고 C, D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B 주식회사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와 사이에,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F(이하 '소외 회사'라 함)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피고 회사, 피보험자 소외 회사, 보험가입금액 180,000,000원, 보험기간 2016. 10. 28. ~ 2018. 10. 27.로 정하여 이행(상품판매대금)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고, 그에 따른 이행(상품판매대금)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(이하 '이 사건 보증보험약정'이라 한다).

2)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의하면,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G연합회의 '신용정보관리규약'에서 정한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등록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구상채무자들은 사전상환의 구상채무를 부담하고,

원고가 피보험자에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(보증보험약정 제3조 제2, 3항, 제4항),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이율은 그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30일째까지는 연 6%, 31일째부터 90일째까지는 연 9%, 그 이후부터는 연 12%이다.

나. 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

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채무 지급을 위하여 발행·교부한 액면금 514,491,670원, 지급만기일 2018. 2. 28.로 된 어음에 대한 결제를 하지 못하였고, 원고는 소외 회사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8. 4. 26.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보험금으로 18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다. 피고 C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처분

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에 따른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던 피고 C는, 2018. 2. 7. 아들인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C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고,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8. 2. 7. 접수 제4746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음)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피고 회사, 피고 C, D에 대한 본래 청구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회사, 피고 C, D은 주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 다음날인 2018. 4. 27.부터 30일이 되는 2018. 5. 26.까지는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의 지연손해금 약정에서 정한 연 6%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8. 6. 20.까지는 위 약정에서 정한 연 9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 C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, 피고 E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 발생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도 아니었으며, 피고 E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

나. 판단

1)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,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,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,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, 앞서 본 사실관계와 제시 증거들을 종합하면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보증보험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,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후 불과 3주만인 2018. 2. 28.에 보증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사전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을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실제로 2018. 4. 26. 원고의 보증보험금 지급이 현실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
2) 사해행위 및 피고 C의 사해의사 앞서 든 각 증거 및 사실관계, 갑 제8, 9, 10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, H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또는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C는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(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 C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포함하여 최소한 590,328,670원 이상이었고, 적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부동산, ② 의정부시 I건물 J호, ③ 경남 남해군 K 소재 45필지의 답(畓)에 대한 각 4/42 공유지분이 있었으나, 이 사건 증여계약

당시의 위 적극재산의 교환가치는 이를 다 합하여도 위 소극재산에 미치지 못하였다),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운용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, 피고 C는 피고 회사가 부도나기 3주 전에 아들인 피고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,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. 또한 앞서 본 C의 재산상태,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및 이행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 C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 C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.

3) 피고 E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(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).

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드러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피고 E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이 선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4)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E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상근

별지